

소 장

원 고 이 신 혜 외 2

피 고 대 한 민 국

소송불가액 금10,256,120원

인 지 대 금51,100원

송 달 료 금22,600원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귀중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137-070)

합동법률사무소 **길벗**
변호사 河昇秀 李相勳

TEL : (02)587-9400
FAX : (02)587-9373

소 장

- 원 고 1. 이 신 혜
2. 김 선 희
3. 이 경 연

원고들 주소 :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父) 이 경 연, 모(母) 김 선 희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상훈, 하승수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 (137-070)

(전화번호 : 587-9400, FAX : 587-9373)

피 고 대 한 민 국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 정 길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이신혜에게 금 8,256,120원, 같은 김선희, 같은 이경연에
게 각 1,000,000원과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137-070)

합동법률사무소 **길벗**
변호사 河昇秀 李相勳

TEL : (02) 587-9400
FAX : (02) 587-9373

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이신혜는 1998. 12. 21. 오후 부산발 서울행 열차를 이용했던 사람으로써, 철도청이 관리하는 열차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같은 이경연, 같은 김선희는 그 부모들인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상법제14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적 사실관계

(1) 원고 이신혜(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여학생)는 1998. 12. 21. 오후 경 모(母)인 원고 김선희와 할머니, 동생과 함께 부산발 서울행 밤 기

차를 타고 서울로 오고 있었습니다. 위 4인의 가족들은 원고 이신혜와 할머니(당시 69세)가 나란히 좌석에 앉아 있었고, 원고 이신혜의 동생과 모(母)인 원고 김선희가 통로 옆의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사는 12월 하순의 겨울이었기 때문에 밖의 온도가 무척 내려간 상태였고, 원고 이신혜는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추위를 녹이려고 자신의 자리 옆 하단부에 위치한 스테인레스 방열판에 자신의 원발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할머니와 모(母)인 원고 김선희는 혹시라도 스테인레스 방열판이 뜨겁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원고 이신혜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열차가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스테인레스 방열판은 미지근한 상태였고 원고 이신혜 또한 내의에 긴 바지, 양말까지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와 원고 김선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위 방열판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2) 당시 위 가족들은 부산의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멀리 하남시에서 부산까지 간 것이었는데, 여행의 피로와 부산으로부터 서울까지의 장거리 기차 여행 때문에 열차에 탄 후 얼마 되지 않아 원고 이신혜는 물론 동생, 할머니, 모(母)인 원고 김선희는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을 자던 원고 이신혜가 깨어서 자꾸 다리가 아프다면서 징징거리기에, 원고 김선희가 원고 이신혜의 다리를 살펴보니 다리가 위 방열판에 데어서 복숭아뼈 위의 살이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갑제2호증의 1. 사진. 실제 데인 면적은 사진 면적의 약 2/3임). 원고 김선희는 아프다며 울기까지 하는 원고 이신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기차내 방송실로 찾아가 테라마이신 연고를 얻어 바르고 오후

11시 30분 경 서울역에 도착하였습니다.

(3) 도착 후 연고를 주셨던 위 승무원이 원고 이신혜를 철도청 분신물 신고 센터에 데려가 그 곳 직원 한 분에게 사고 경위를 말하니, 그 직원이 장부에 주소와 이름 등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이신혜의 다리를 찬물로 씻은 후 바세린 거즈를 발라 주어서 위 가족들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원고 이신혜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며 너무 아프다고 하여 하루밤을 꼬박 샌 후 아침 일찍 서울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3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나중에도 흉이 많이 지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갑제3호증, 진단서 참조).

나. 철도청의 영조물 관리 하자

(1)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위 영조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관리청인 철도청은 마땅히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만일 그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나, 피고는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습니다.

(2) 즉 당시 좌석에는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의 표시가 없었고(갑제4호증 각 사진 참조), 또한 방열판에 데일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차 여행에 익숙하지 아니한 할머니, 어머니, 아이 2명으로서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온기가 있는 방열판이 오히려 감사하였고, 나중에 위 방열판이 위험물로 변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철도청이 방열판 근처에 “장시간 접촉하면 위험합니다”라든가, “방열판이 간혹 매우 뜨거울 때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는 표시만 하였더라도, 원고 김선희는 원고 이신혜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을 것입니다.

더하여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방열판이 매우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테인레스라는 열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안이하게 방치하였으며, 설계상으로도 승객들이 근접하기 어렵도록 상단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승객 중에는 어린아이나 소아마비의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혼자서는 완전한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도청으로서는 승무원 교육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나. 상법 제148조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또한 원고 이신혜는 승차권을 구입하여 탑승함으로써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148조에 따라 운송인의 손해배

상 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2) 철도청은 이 사건을 단순히 본인 내지 보호자의 과실로 주장할 수도 있으나, 사회 통념상 이 사건 사고가 원고들과 같이 기차 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의 표시나 안내 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연히 승객들이 알아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후 원고 김선희는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닌가 해서 당시의 상황을 계속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설마 방열판이 그렇게 문제가 될 줄은 당시로서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사고 후 주위 사람에게 이를 이야기하니, 간혹 방열판이 너무 뜨거워 그 위에 가방을 놓을 때 가방 밑이 녹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청은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당시 열차에 객실자동온도조절센서가 3곳이나 설치되어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는 데 이상이 없었고, 열차 승무원이 차내 순회 중 실내 온도가 적정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갑제6호증, 참조), 원고 이신혜는 실내 온도가 아닌 방열판에 다리를 데인 것이고, 또한 추운 날씨에 실내 온도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방열판의 온도는 보통 때보다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이후 원고 이신혜는 물론 원고 김선희와 원고 이경연도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IMF 이후 어려워진 가정 환경 때문에, 병원에서는 최소한 2주간 입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과 9일 밖에 입원시키지 못하였고, 그것도 6인실의 병실에서 최소한의 치료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식이 아프다고 창열거릴 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해줄 때의 부모 심정은, 아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 김선희는 수술실 밖에서 원고 이신혜가 다리에 4군데나 마취 주사를 받으면서 고통 때문에 울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을 들으며, 기차를 1번 탄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원고 이신혜의 다리에는 겉에서 보기에 확연히 표시가 나는 흉터가 남아 있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약을 바르지 않으면 살갓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어서 계속 약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 후 위 이신혜는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절대로 치마를 입지 않고 긴 바지만 고집하고 있습니다(갑제2호증의 2. 사진은 현재 원고 이신혜의 흉터로써 실제 면적은 1/2정도입니다). 원고 김선희와 원고 이경연은, 원고 이신혜가 자신의 다리에 콤플렉스를 느끼는 것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평생 다리에 상처를 지니고 살아갈 딸아이 생각에 하루하루의 날들을 가슴아프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고 당사자인 원고 이신혜는, 여자로서 외부에 노출할 수 밖에 없는 종아리에 동전만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어, 만일이 상처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에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나. 원고들은 지금까지 총 256,120원(통원치료비 117,000원 + 입원비 139,120원)을 지급하였고(실제로 약값 등을 포함하면 그 보다 훨씬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원고 이신혜가 딸인 점을 생각하면 흉터를 없앨 수술을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이에 원고 이신혜는 위 치료비(소극적 손해액 256,120원)과 위자료 8,000,000원 합계 금 8,256,120원을, 원고 김선희, 같은 이경연은 위자료 각 1,0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강제1호증 | 국가배상신청접수 증명원 |
| 1. 강제2호증의 1 내지 2 | 각 사진 |
| 1. 강제3호증 | 진단서 |
| 1. 강제4호증의 1 내지 9 | 각 사진 |
| 1. 강제5호증의 1 내지 2 | 각 영수증 |

- 1. 강제6호증의 1 내지 2 각 민원회신
- 1. 강제7호증 호적등본
- 1. 나머지는 구두 변론시 수시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첨 부 자 료

- 1. 소장 부분 1통
- 1. 위 입증방법 각 1통
- 1. 위임장 1통
- 1. 납부서(송달료) 1통

1999. 7.

원고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변호사 하 승 수

서울지방법원 귀중